

M A R K E T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의 오해와 진실

직장생활을 하는 김씨(여, 34세)는 3년차 맞벌이 부부이다. 평일에는 장보기가 어려워 주로 주말에 장보기를 하는 편이다. 그런데, 매월 2·4주째 일요일은 대형마트나 SSM이 쉬는 곳이 많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정부가 이렇게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충남지역 천안, 아산 등 7곳 대형마트·SSM, 매월 2·4주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실시**

당진, 서산, 천안, 공주, 아산, 보령, 계룡 7개 지자체는 현재 의무휴업(매월 2·4주째 일요일)을, 논산, 홍성, 예산, 태안 4개 지자체는 자율휴업(2·4주째 수요일)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2시간 늘어난다. 충남지역은 오는 4월 둘째 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도는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충남지역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형마트·SSM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형마트·SSM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가져올 폐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 집중 현상이 빚어지면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협력업체들은 납품가격 인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제한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한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에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형마트 파견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적고, 소비자나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규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결국 독자의 몫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들이 있다. 정부의 정책대상은 모두가 해당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규제의 대상이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활동에 반(反)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형마트·SSM 규제도 마찬가지다.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충표**



대형마트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알아보기

★ 주요 규제내용



대형마트 의무자율 휴업

휴업

영업제한시간 확대
0~8시 → 0~10시



충남의 현황



매주 2 · 4주째 **일요일 “의무휴업”**

매주 2 · 4주째 **수요일 “자율휴업”**

“ 4월 둘째주 부터 ”

영업제한 시간 확대 실시 ”



14
대형마트

39
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 · SSM 규제 찬반 토론

찬성

- ①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 ② 독과점 구조 우려,
- ③ 과다경쟁-과소비,충동구매 조장
- ④ 과도한 노동시간 감축

YES VS NO

반대

- ① 소비자 선택권 제한
- ② 파견직 근로자 고용감소
- ③ 대형마트 협력업체 피해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 개입

내수경기 위축
소비자 · 대형마트 종사자 피해